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19
----------	--------

제안년월일 : 2023년 07월 0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설치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의안의 위원회 신설검토서 첨부 대상에서 의원 발의안을 제외한 시장 제출 안건만 적용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위원회 신설검토서 첨부 대상에서 의원 발의안을 제외함(안 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포함되는”을 “필요한”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을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으로, “검토한 위원회 신설검토서(이하 “신설검토서”라 한다)”를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로 한다.

안 제12조제4항 중 “총괄부서는”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의회에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위원회 신설검토서(이하 “신설검토서”라 한다)</u>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필요한 -----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p>
<p>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④ 총괄부서는 -----</p> <p>-----.</p>	<p>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총괄부서의 장은 -----</p> <p>-----.</p>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원회명	
설치근거	※ 법령상 위원회일 경우 법령, 조례 모두 기재
설치목적	○ -
설치 필요성	
위원회 성격	자문(), 심의(), 의결() ※ 여러 성격 동시에 가질 경우 중복 표기
설치요건 부합 여부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부합여부 상세 기재
기존 위원회와 중복·유사 여부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존재 (유□, 무□)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유□, 무□)
상설위원회 설치요건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부합여부 상세 기재
위원회 필수 구성내용을 조례에 반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구성 및 임기(임기는 상설위원회만 규정) <input type="checkbox"/> 존속기한(법령상 강행 위원회 제외) ※ 존속기한 5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위원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input type="checkbox"/> 회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input type="checkbox"/>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input type="checkbox"/>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첨부자료 (담당부서만 제출)	- 관련 조례 제·개정안 - 위원회 설치요건 부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자료 등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생 략)</p> <p>② <u>시장 등은 시 또는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u></p> <p><신 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u>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u></p> <p>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p> <p>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u>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p> <p>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p> <p>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 략)</p> <p>② <u>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u>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② (생 략)</p>	<p>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